

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공고 제 2019-3호

2019년 장충동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『2019년 장충동 주민모임활성화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. 2. 25.

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장



1. 공모사업 개요

- ☐ 사업내용 : 지역 현안 중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공공성 · 지속성을 갖춘 주민제안 참여 사업
- ☐ 사업장소 : 장충동 관내
- ☐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19. 11월까지
- ☐ 공고기간 : 2019. 2. 25. ~ 3. 15.
- ☐ 신청자격
 -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또는 생활권역(직장 학교 등)이 해당 동에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비영리 법인, 단체 등
 -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임의단체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 등을 말함

- 주민모임은 해당동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모임
- 직계 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
-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

※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

□ 사업예산 : 금 26,200천원

□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

○ 지원분야

사업종류	이웃만들기(씨앗기)	우리마을활동지원
분 야	제한없음	
주요내용	(예) 생활체육, 문화예술, 육아, 골목반상회, 봉사, 나눔활동 등	
지원예산 (모임별)	100만원 이내	300만원 이내
지원사항	사업운영비 ※ 식비 및 다과비 40% 이내 편성가능 ※ 자부담 미편성 가능	사업운영비, 활동비(20%), 업무진행비 ※ 식비 및 다과비 20% 이내 편성가능 ※ 자부담 5% 의무 편성
대 상	- 마을활동 경험 없는 신규 주민 모임(또는 단체) - 단, 기존 활동 경험 있는 주민모임 (또는 단체) 신청 가능	- 기존 마을사업 활동경험 있는 주민모임(또는 단체) - 구청에서 실시한 보조사업수행 경험 있는 주민모임(또는 단체) - 단 신규 주민모임(또는 단체)도 신청 가능
심 사	동주민센터 전문심사위원 심사	제안자 참여심사 (전문가심사 50%, 주민평가단 50%)
보조금시스템 사용여부	미사용	사용
사전상담 및 컨설팅	사전상담 및 컨설팅 의무사항 아님	사전상담, 선정자 교육, 실행 및 회계 컨설팅 필수

○ 지원규모 : 심사 후 차등지원

○ 지원범위

- 이웃만들기 사업 : 사업운영비 지원, 자부담 미편성 가능
- 우리마을활동지원 사업 : 사업운영비, 활동비, 업무진행비 지원, 자부담 5% 의무 편성

- 활동비는 시간당 10,148원(2019 서울시 생활임금)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,
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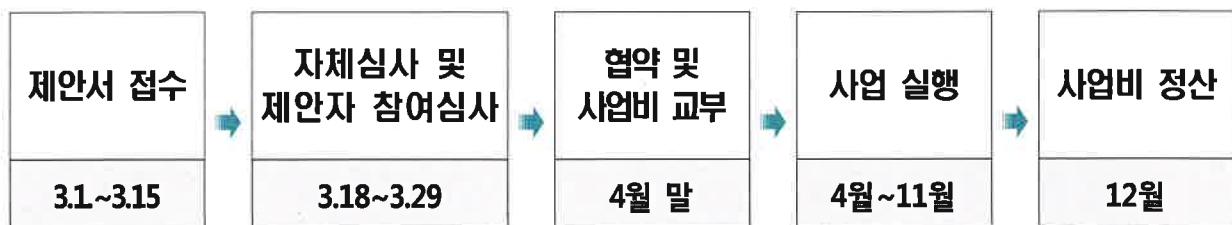
※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(예: 7시간 활동 시 71,036원→71,040원)

○ 비목 및 편성항목별 비율은 「2019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」 참조

☞ 제외대상 사업

- 전년도 구에서 실시한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/모임
-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-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직업훈련, 교과목 특기적성, 어학,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
-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
- 1회성 행사 및 축제
-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
-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

□ 사업추진 절차



※ 상기 심사 일정은 변동가능

□ 통합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장 상담 실시

○ 일 시 : 2019. 3. 7.(목) 10시~12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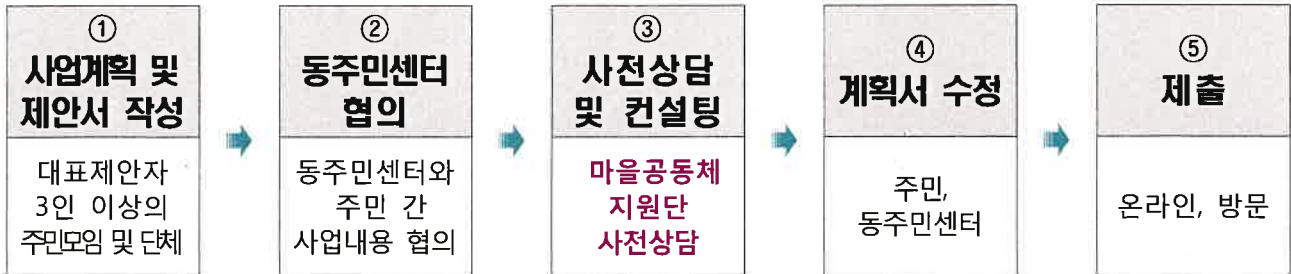
○ 장 소 : 광희동주민센터

※ 장충동주민센터 현장 상담 : 2019. 3. 7.(목) 14시~17시

2.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

□ 접수기간 : 2018. 3. 1.(금) ~ 3. 15.(금)

□ 사업신청 절차



※ 우리마을활동지원 사업 지원시 마을공동체지원단의 “③사전상담 및 컨설팅”은 필수이며, 이웃만들기 사업은 의무사항 아님

(“①사업계획 및 제안서 작성” 단계에서도 사전상담 가능)

※ 우리마을활동지원 사업 중 골목 관련 사업은 “②동주민센터 협의” 필수
(그 외 분야는 “② 단계” 권고 사항임)

※ 사전상담 및 컨설팅 :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단 (☎2231-5307)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및 방문신청

○ 온라인 접수 : 담당자 이메일(soo0054@junggu.seoul.kr)

○ 방문접수 : 장충동주민센터 동정부팀 (☎3396-8503)

□ 제출서류 : ①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

②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

③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(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)

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
※ 사업신청 관련 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

□ 사전상담 지원

○ 대 상 :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

○ 지원내용 :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 상담 등

○ 문 의 :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단 (☎02-2231-5307)

3. 공모사업 선정

□ 심사 및 선정

○ 이웃만들기 분야 : 장충동주민센터 전문 심사위원 심사

○ 우리마을활동지원 분야 : 제안자 참여심사

- 일 시 : 2019. 3. 18.(월) ~ 29.(금) 중 개별통보

- 장 소 : 장충동주민센터

- 심사방법 : 제안자참여 심사방식 (제안자 상호간 교차심사)

■ 제안자 설명 및 질의응답

- 모임별 2명이상 참석하여 1명은 5분간 발표, 나머지 1명은 다른팀 심사(본인사업 평가금지), 각 발표후 질의응답

■ 심사(100점)=주민참여심사(사업제안자 중 1명)(50점)+전문심사위원(50점)

■ 동별 전문 심사위원 구성(6명 이내)

- 당연직 : 동장, 주민자치위원장,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단 또는 중구 찾동 추진지원단
(☎ 중구 마을공동체 및 찾동 추진지원단 : 02-2231-5307, 장충동 소재)
- 외부위원 : 마을, 복지, 교육 관련업무 전문인력 등

■ 심사기준

심사항목		구체적 내용
주민참여의지 (20점)	자발성(10점)	○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업
	주민참여(10점)	○ 주민의 욕구 및 의지 파악정도, 주민의 공동체 활동 내용 및 향후 공동체 활동계획
사업의 적합성 (15점)	사업의 필요성 (10점)	○ 동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고민 여부 ○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여부
	예산의 합리성 (5점)	○ 사업 내용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합성
사업의 가능성 (15점)	실행 가능성 (15점)	○ 사업의 구체성, 현실가능여부, 지속가능여부

■ 선정자 결정 : 평가표에 의거 선정자 및 차점자(예비선정자) 선정

■ 심사시 유의사항

- 균형잡힌 심사기준에 의거 주민 상호채점이 이루어지도록 조율
-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, 주민들의 욕구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의지 판단 필요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□ 선정발표 : 2019. 4월 말 예정 /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

4.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

□ 사업비 교부절차

○ 사업비 교부절차

: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→ 사업선정 대상자와 협약 체결 → 우리은행
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→ 전용계좌 입금

□ 사업비 정산

○ 정산방법

-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,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
-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

○ 정산시기

-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
- 다년도 계속 사업이어도 당해 연도 정산 시행 필수

○ 제출서류

- 마을공동체사업 최종보고서 1부
- 지출증빙서류 원본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입금증 등) 각 1부
- 보조금 통장 사본(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역 전체) 1부 등

5. 유의사항

가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나.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,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구 보조금지급 조례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.

다.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
-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

6. 기타 문의

☐ 서울시 중구 장충동주민센터 동정부팀 (☎3396-8503)

☐ 서울시 중구 마을공동체지원단 (☎2231-5307)